

## 방화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icient Improvement Ways of Fir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국형호<sup>†</sup> · 조대호\* · 공하성\*\*

Hyeong-Ho Kook<sup>†</sup> · Dae-Ho Jo\* · Ha-Sung Kong\*\*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2007. 5. 17. 접수/2007. 7. 27. 채택)

#### 요약

소방법 제정 당시부터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차원에서 방화관리제도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방화관리제도는 관리적·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개편과 민간소방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한 통합방화관리체계구축, 교육환경개선 및 방화관리자 자격기준과 교육강화 등 방화관리자 교육제도의 개편, 효율적인 방화관리 운영을 위해 방화관리대상물의 종합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ABSTRACT

Fir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prevent structure fire since establishment of Fire Prevention Act. Nevertheless, Damage by fires is continu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pproaches to improve fir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into the fire prevention properties. Now fir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has lots of the problems in managerial and systematical aspects. To improve these a unified fir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 by suggests revision of a unified Fire Prevention Act and foundation of Fire Prevention Institution, reform educational system for the fire safety directors would be essential to includes environment improvement, enhancement of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education, a standardized computational management system of the fire protection properties must be build for efficient fire protection operations.

**Keywords :** Fire protection management, Fire safety director, Fire prevention property

#### 1. 서론

대구 지하철역 화재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학숙소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통적 원인을 살펴 볼 때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면 대형 인명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 안전관리의 핵심인 방화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고도로 다양화되어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화재라는 재난을 정부 행정기관의 일방적 주도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고, 민·관이 상호 보완적으로 체계를 갖추었을 때 그 기대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소방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자격자가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관리와 화재발생시 초동대응태세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화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방화관리 제도하에 나타나고 있는 운

<sup>†</sup>E-mail: 123218@hanmail.net

영실태와 문제점 및 원인을 조직구조론적<sup>1)</sup>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방화관리에 있어서 법·제도적 운영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하여 첫째, 우리나라 방화관리제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방화관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방화관리제도가 조직적 차원에서 확고한 위상을 설정하고, 방화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패러다임(paradigm)을 정립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방화관리제도에 관한 국내외 논문, 소방관련학술지, 소방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저자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방화관리자 등 교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아 온 경험 등을 접근방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하였고,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에서 발행한 각종 소방관련 통계자료 및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전산데이터의 통계자료, 소방월간지 등을 참고하였다.

방화관리제도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특정소

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 및 자위소방대 등에 국한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선행 연구의 경향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현행 방화관리제도의 구조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적·관리적 측면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 방화관리제도의 비교분석

### 2.1 우리나라의 방화관리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자체 방화관리업무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케 함으로써 자위소방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 2.1.1 방화관리자의 업무<sup>2)</sup>와 역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화재예방을 위한 ① 소방계획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fire prevention property<sup>3)</sup>

1 급 방화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방화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1급 대상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방화관리 대상물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공립학교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라) 「지방공기업」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마)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그 역할로는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자위소방대원들과 협력, 인명대피 유도 및 화재진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초기대응 능력을 지도하는 업무를 방화관리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다.

### 2.1.2 방화관리 대상의 구분

화재 위험도 및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

는 특정소방대상물을 Table 1과 같이 1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그 외 대상을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고, 공공기관은 별도의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고 있다.

### 2.1.3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소방관련 소정의 지식이 있는 자 즉,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 등이 있어야만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방화관리자 1급·2급 및 공공기관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자격요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Qualification requirement of fire safety director<sup>4)</sup>

1 급 방화 관리자 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li> <li>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li> <li>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li> <li>「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 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li> <li>「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li> <li>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li> <li>「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 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li> <li>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li> <li>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li> </ol>
2 급 방화 관리자 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사 · 전기 산업기사 · 전기공사기능장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li> <li>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li> <li>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li> <li>「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 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li> <li>「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li> <li>「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li> <li>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1급 방화관리자 자격조건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li> </ol>

Table 2. Continued

공공기관 방화 관리자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자
-------------------------	--

#### 2.1.4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간 및 시험

1급 방화관리자 및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는 5일(40시간), 2급 방화관리자는 4일(32시간)<sup>5)</sup>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급 방화관리자와 2급 방화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 평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sup>6)</sup>로 하고 있다.

#### 2.1.5 방화관리자에 대한 벌칙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내지 제53조(과태료) 규정에 의해 방화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관리자의 선 ·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1.6 방화관리 능력평가제도\*

방화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유도 등 민간자율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활동 등 방화관리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대상물의 방화관리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실시하고 있는 「방화관리능력평가제도」의 평가요소는 ①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부합한 소방계획, ② 자위소방대 조직 및 적정임무 부여, ③ 소화 · 통보 · 피난 등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④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정비 등 유지관리, ⑤ 방화관리자의 기술 능력 및 책임의지 등이며, 현장평가 및 심사기준은 ①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② 경영자의 재정지원, ③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④ 이용자(관계인 등) 안심 · 만족도 및 안전관련 상 · 별, 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 피해사항에 대한 가감 등이다.

#### 2.2 미국의 방화관리제도

미국의 방화관리제도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선임하는 정도이고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도 없다.<sup>7)</sup> 이는 소방관계법령에서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방화관리자를 두고 있는 업체는 화재보험을 산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높다. 이 방화관리의 자율화를 위한 동기부여의 제도적 신뢰는 한국에의 도입가능성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들은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교육 기관에서 소방공학과(Fire Protection Engineering Department)를 전공한 경우가 많고 이들은 업체 내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

미국의 방화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 전반에 관한 관리책임<sup>8)</sup>을 진다.

- ① 화재위험도 평가
- ② 화재예방요령 설정
- ③ 화재예방 프로그램에 관련된 체계와 장비의 기준과 명세의 설정
- ④ 소방장비의 점검계획
- ⑤ 방화관리를 위한 법률과 조례, 준칙이나 기술기준 등의 해석
- ⑥ 직장 자위소방대의 조직
- ⑦ 자체소방대의 운영과 지도
- ⑧ 화재진화에 관한 지휘본부 운영
- ⑨ 소방서와의 협력관계 유지
- ⑩ 화재자료의 배포 등에 관한 사항

방화관리자는 화재발생시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는 외에 자체소방대를 운영하여 초기에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화재진압상의 임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 뉴욕시의 방화관리제도 중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과 방화관리자의 자격 요건, 방화관리자가 하여야 할 임무, 제재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화관리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1급 방화관리대상 등에 대해 소방서의 현장 합동평가단 운영 및 소방본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소방방재청의 현지실사 등 3단계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 우수 방화관리자(전국 20여명)는 개인표창(장관, 청장)을 비롯, 해당시설의 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면제, 한국화재보험협회 통보 후 보험료율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2.2.1 방화관리자의 고용 대상

방화관리자의 고용근거는 뉴욕시 조례 및 소방관서 확정공고문 등에 명시되어 있다. 건축물의 요건별로 등급<sup>9)</sup>이 정해지고 등급에 맞는 방화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의 특성과 건물 내 거주 인원, 객실보유, 객실의 높이 등으로 구분하여 방화관리자의 등급이 결정되는데 뉴욕시 조례에서는 등급 E에 해당하는 사무용도 건물과 등급 J-1에 해당하는 호텔 및 모텔에 대하여 뉴욕시 소방본부에서 제공하는 방화관리자 교육 및 시험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Fire Safety Director(방화관리자 1급 해당)를 두도록 하고, Fire Safety Director는 하부에 하급 또는 보조 방화관리자(Deputy Fire Safety Director)를 두고 업무를 보조하며, 주 방화관리자 부재 시 보조 방화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뉴욕소방본부의 소방안전계획 동의사항 중 사무용 건물(Fire Safety Plan and Guidelines-Office Buildings)에는 방화관리자와 보조 방화관리자 및 충별 화재통보와 피난을 위한 화재감시인 및 보조 화재감시인 그리고 피난 관리인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대형건물도 동일하다.

등급 F에 해당하는 거주를 위해 30명 이상이 사용하거나 15명 이상이 상시 거주하는 건물에는 Fire Safety Coordinator(F-24)<sup>10)</sup>(Fire Safety Director보다 하급수준, 2급 상당)를 두어야 한다(상업용도의 건물이나 교회, 학교, 지역주민센터, 보호시설 그리고 거주를 위해 사용되는 기타 건물).

### 2.2.2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만 18세 이상으로 화재예방 및 건물관리에서 5년 이상, 소방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방화관리자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54시간의 교육과 12시간의 소방지

회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필기시험 70점 이상 및 현장시험(소방시설 작동 및 건물화재시 운영에 대한 실기)에 합격한 자로 한한다. 일반 2급 상당 Fire Safety Coordinator의 경우 별도의 교육은 없으며, 필기시험으로 갈음한다. 보조 방화관리자의 자격도 1급에 준용하여 자격과 교육이수 및 시험을 통해 부여되며 Fire Safety Director의 시험결과는 1년이 유효기간으로 이후 재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 다른 자격을 가진 경우라고 해도 시험 등의 예외 규정은 없다.

### 2.2.3 방화관리자의 업무

미국(뉴욕)방화관리자의 업무는 Table 3과 같다.

### 2.2.4 방화관리자에 대한 벌칙

방화관리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벌금, 과태료 규정이 뉴욕시 Local City Law에서는 없으나, 화재보험사에서 방화관리자 미고용 및 소방안전계획 미 이행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인상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 2.3 일본의 방화관리제도

일본의 자위소방체제는 한국과 유사한 중앙집권적 법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행정제도 면에서는 영·미 법계국가의 법체제와 대륙법계 국가의 법체제를 절충하여 자치체제의 경향이 한국에 비하여 높다. 일본의 방화관리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3.1 방화관리자의 책무<sup>12)</sup>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때는 필요에 따라서 당해 방화대상물의 관리에 대한 권원을 가진 자의 지시를 받아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Table 3. Duty of fire safety director in United States(New York)<sup>11)</sup>

주요 업무	
건물의 소방안전 계획의 이행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수행 중 소방관서와의 연락 및 자문</li> <li>· 건물 거주자에 대한 화재와 소방관서의 활동에 대한 공지</li> <li>· 화재나 재난 발생시 거주민의 대피</li> </ul>
긴급상황시 지휘소에 신고 및 진압현장 운영 자문, 지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및 긴급 상황의 발생 장소 보고</li> <li>· 대피가 필요한 거주민의 위치 및 상황 보고</li> <li>· 거주민과 소방시설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li> </ul>
화재예방계획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소방대 관리, 충별 화재감시원 감독, 충별 보조 화재 감시원 감독</li> <li>· 건물 피난 관리인 감독</li> </ul>
소방관서에 대한 정보 제공	
각종 점검 및 기록 유지	
소방훈련의 이행	

있으며, 그 책무로는 ① 소방용에 쓰이는 설비, 소방용 혹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점검 및 정비, ② 화기의 사용 혹은 취급에 관한 감독, ③ 소방계획의 작성, ④ 소화, 통보 및 피난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등이 있다.

### 2.3.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방화대상물

방화대상물은 갑종방화대상물, 을종방화대상물로 각각 구분이 되는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용도, 연면적, 수용인원에 대한 분류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the fire prevention property that appoint fire safety director - Japan<sup>13)</sup>**

구분 \ 항목	갑종방화대상물 (갑종방화관리자)		을종방화대상물 (을종방화관리자)	
용도	특정 방화대상물	비특정 방화대상물	특정 방화대상물	비특정 방화대상물
연면적	300 m <sup>2</sup> 이상	500 m <sup>2</sup> 이상	300 m <sup>2</sup> 미만	500 m <sup>2</sup> 미만
수용인원	3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미만	50인 이상

**Table 5. Classified index of the fire prevention property in Japan<sup>14)</sup>**

(1)*	① 극장, 영화관, 공연장, 오페라하우스, 관람장, 스크립극장 ② 공회장, 집회장
(2)	① 카바레, 카페, 나이트클럽, 핑크슬롱, 랜제리pub,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장
	② 놀음장, 무도회장
	③ 성풍속 관련 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점포(페션헬스, 이메클럽 등)
(3)	① 대합실, 요리점 기타 유사한 사업장
	② 음식점
(4)	백화점, 마켓, 기타 물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또는 전시장
(5)	① 여관, 호텔, 숙박업소 등 ②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① 병원, 진료소, 산후조리원, 조산소 ②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 노인보건시설, 구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신체장애인 보호시설, 정신박약자구호시설, 정신이상자 사회복지시설 ③ 유치원, 특수학교, 간호학교 등
(7)	소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종 학교 및 유사건물
(8)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9)	① 대중목욕탕, 증기목욕탕, 사우나, 소프랜드 등 ② 전 향에서 들은 공중목욕탕 외의 대중목욕탕
	(10) 정거장, 선박 또는 항공기 발착장
(11)	사찰, 교회 등
(12)	① 공장, 작업장 ② 영화스튜디오, TV스튜디오 등
	(13) ① 자동차차고, 주차장 ②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격납고
(14)	창고
(15)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사무실, 은행, 재판소 등)
(16)	① 특정용도 (1)항에서 (4)항까지 (5)항①, (6)항 또는 (9)항①에서 들어가는 방화 대상을 용도에 속하는 건물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방화대상물 ② ①이외의 복합용도 방화대상물

\*방화대상물에 대한 대단위 분류 번호이며, 방화대상물의 대단위별 종류에 따라 소단위로 분류된다.

Table 5. Continued

(16-2)	지하가
(16-3)	건축물의 지층(16의 5층의 각층 제외) 연속한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해당 지하도를 합친 것 (1)층에서 (4)층까지, (5)층에서 (6)층까지 또는 (9)층①에 해당하는 방화대상물 용도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한함
(17)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중요문화재, 중요유형 민족문화재로 지정되어 중요 미술품 등으로 규정된 건조물
(18)	길이 50m 이상의 아케이드

※비음영부분은 특정방화대상물\*\*이고, 음영부분은 비특정방화대상물\*\*\*임.

Table 6. Qualification requirement of fire safety director<sup>15)</sup>

갑종방화대상물	을종방화대상물
1. 갑종방화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 과정을 수료한 자 2. 학교교육법에 의한 대학,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방재에 관한 학과 또는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1년 이상 방화관리의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자 3. 소방직원으로 관리적 또는 감독적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1. 을종방화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 과정을 수료한 자 2. 갑종방화대상물의 자격요건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3.3 방화관리자의 자격

방화대상물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리적 또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며, 갑종방화대상물 및 을종방화대상물에 대한 자격요건은 Table 6과 같다.

### 2.3.4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

갑종방화관리자는 2일간(680분) 10과목, 을종방화관리자는 1일간(320분) 5과목 강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3.5 방화관리자에 대한 벌칙

방화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벌칙은 1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한화 약 770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관리자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십만엔(한화 약 384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관리자의 선·해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3십만엔(한화 약 231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 2.3.6 방화대상물에 대한 표시·공표제도

「표시·공표」 제도<sup>16)</sup>는 1981년 11월 20일 발생한 프린스호텔 화재를 계기로 방화대상물의 방화대책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에 따라 1982년도부터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특정의 방화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방화기준에 적합한 시설

물에는 「적(適)mark」를 교부하였고, 한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위반 소방대상물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는 제도로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방화관리에 충실을 기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방화대상물이 방화상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표시하는 대상물의 범위는 소방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화대상물 중에 극장, 백화점, 호텔 등이 있다. 적정항목(28개 항목) 모두 적합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방화관리 「적합」 mark를 교부하고, 해당 대상처에 이 mark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한편 소방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대상물에 대하여는 그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방화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방화관리업무의 적정화 내지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관리, 소방용 설비 등이 소방관계법규에 위반하였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기한부 조치명령을 발하고, 해당 명령에 위반해서 기간 내에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대상물은 그 취지를 공개한다.

공표의 내용과 방법은 방화대상물의 소재지 및 명칭, 위반내용에 관하여 보도기관에 공시함과 동시에 광고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는데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기준 적합 표시제도」를 운

\*\*호텔, 병원, 물품판매점, 대형할인점 등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건물

\*\*\*공장, 사무실, 공동주택 등 특정인이 출입하는 건물

영하고 있다.

#### 2.4 한국과 외국의 방화관리제도 비교분석

우리나라와 외국의 방화관리제도에서 보이는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방화관리의 대상을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은 비슷한 형태이나 뉴욕시의 경우에는 다양한 등급으로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둘째, 자격요건에 있어 뉴욕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건물관리를 하였거나 소방관으로 근무한 자에 한해 일정시험을 통해 엄격한 선발(소방기술사 등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방화관리자 시험에 예외가 없다)을 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관리적 또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방화관리자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은 있으나 형식에 치우치고 경력과 직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셋째, 방화관리자 업무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별 다른 차이는 없지만 뉴욕의 제도에서 보이는 충별 화재감시원, 보조 화재감시원이 있어 이들을 감독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다.

넷째, 제재조치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행정벌과 행정질서벌을 통해 제재하지만, 뉴욕은 화재보험을 인상 등을 제재조치로 활용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는 방화관리 능력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방화관리대상물에 방화기준 적합 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3. 방화관리제도의 문제점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성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다원화된 시민사회 환경에서 정부주도의 예방소방행정<sup>17)</sup>은 그 적응력과 효과성이 격감되고 있다.

첫째, 정부주도의 예방소방행정은 과다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조리의 단초가 되고 있다.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위험을 소방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간섭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화재예방은 소방서의 책임이 아니라 하는 식의 방관자로 전락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민간의 이해관계와 유인(incentive)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반응성이 부족하여 민간부문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Table 7. The present condition of fire protection management vicarious execution by fire safety inspection agency<sup>18,19)</sup>**

(unit : a place)

구분	계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2005년	12,413	9,967	2,446
2006년	17,297	13,714	3,583
증감(%)	4,884(39.3%)	3,747(37.6%)	1,137(46.5%)

따라서 방화관리는 건물주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하위직원 위주로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책임 있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 등에 대한 효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화관리업무를 타 업무와 겹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화관리업무 등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3.1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한 업무대행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부 관계인이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대행업체에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방화관리에 대한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되어 방화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방화관리업무대행 현황은 2005년 대비 2006년에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412개소에서 17,297개소로 39.3%가 증가하였다.

#### 3.2 방화관리자 부재시 화재대응능력 부족

호텔 및 각종 사업장 등 24시간 영업 중인 방화관리대상물에서 방화관리자가 주간 근무 후 퇴근하면 야간에는 경비원 등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방화관리업무 공백으로 화재시 종사자의 초기 대응능력 부족으로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건축물 양도·양수 및 경매, 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홍보 및 관계자\*의 인식부족으로 방화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을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방화관리자 미선임 및 미신고로 인한 벌칙과 과태료 처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3.3 방화관리의 제도적 문제점

3.3.1 방화관리관련 법령의 빈번한 제·개정으로 국가예방소방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국민의 불신초래 방화관리관련 방화관리대상물의 구분, 방화관리자 선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일련의 행위관계가 관련된 자로 통칭한다.

임자격 기준, 선임신고, 방화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이후부터 2004년 5월 30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대형화재 발생시 등에 화재예방대책으로 법령 강화 등을 목적으로 많은 횟수에 걸쳐 법령을 제·개정하여 국가예방소방정책에 발전과 변화를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소방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본다.

### 3.3.2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으로 방화관리자 선임에 따른 방화관리업무 소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실태를 보면 소방기술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비전문가인 기관장으로 선임한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73.9%<sup>20)</sup>로 분석되어 공공기관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무관심과 소홀로 인한 형식적인 방화관리가 되고 있다.

### 3.3.3 방화관리자 해임신고제도 폐지로 인한 해임여부 확인 곤란

2003년 5월 29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신고가 없어 해임자 확인이 곤란함과 동시에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 관리에 대한 행정도 미흡한 실정이다.

### 3.4 방화관리자 자격인정의 문제점

방화관리는 관심도만으로는 내실화를 기할 수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건물 내 상주하지 않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방화관리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방화관리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선임된 방화관리자에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의 책임이 주어짐으로 방화관리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재하여 방화관리의 부실이 초래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자에게 방화관리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한다.

#### 3.4.1 이론위주의 필기시험에 의한 방화관리자 자격인정

건축물의 규모, 소방시설 현황, 수용인원 등 방화관

**Table 8. The change process of method that recognize fire safety director qualification<sup>21)</sup>**

기간	자격인정
1958.3.11~1976.3.26	강습교육수료자
1976.3.27~1992.7.27	강습교육수료 후 시험합격자
1992.7.28~2004.5.29	강습교육수료자
2004.5.30~현재	강습교육수료 후 시험합격자

리대상물의 특성에 관계없이 이론위주의 획일적인 강습교육으로 소방시설 조작 및 숙달훈련 등 실기실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격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3.4.2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및 학·경력에 의한 미시험으로 자격부여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는 공공기관 대상물의 규모와 수용인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방화관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거나 일정한 경력을 갖춘 경찰 공무원 등에게도 학력 및 경력에 의하여 자격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자격을 인정하여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을 교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급하여 교부된 학·경력에 의한 2급 방화관리자 수가 2005년 한 해 동안 만 해도 4,727명으로 이는 2005년 강습교육 수료자 29,195명 대비 16.2%<sup>22)</sup>나 된다.

## 4. 방화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4.1 건물주(관계인)의 의식개선

방화관리제도는 화재가 발생하는 건물의 관계인의 책임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관계인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때 자율방화관리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다. 대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인의 화재에 대한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4.2 화재예방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 제시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돌아보면 때때로 큰 틀 속에서 소방이라는 조직과 업무에 국가적인 관심이 미미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은 실로 막대하였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2003년 2월 18일)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국민의

식수준이 얼마나 후진국이었느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 한 오늘날 과거처럼 타율적으로 국가의 행정을 국민들에게 억압하고 간섭하여 국가목적 달성을 이루는 시대는 지났다. 화재예방이라는 행정도 국민의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 모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은 자율방화관리가 정착되고 계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 4.3 방화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 4.3.1 점검실무 능력평가를 통한 자격부여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방화관리자격이 주어지지만 자체점검 대상물인 경우 방화관리자가 직접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하므로 이론교육과 필기시험을 통해서는 점검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방화관리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기술능력부족이다. 뉴욕의 경우 방화관리자가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3번의 시험\*을 치른다. 현장시험은 구술시험과 다양한 구조장비에 대한 실연이 포함되며, 전화를 통해 영어로 통화할 것을 요구하고 FSD(Fire Safety Director)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를 평가한다(보고 듣기 위해 교정장치는 허용된다). 또한 ① 화재응급에 대한 지식을 평가, ② 어떻게 건물관리인을 훈련시킬 것인지를 평가, ③ 화재응급상황과 특정빌딩 정보를 평가, ④ 빌딩의 화재시나리오, 화재지휘본부의 완벽한 실습을 평가한다. 뉴욕의 방화관리제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로 이론위주의 교육과 필기시험은 물론 점검실무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4.3.2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자격소지자 선임

공공기관에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가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로 선임하는 것을 방화관리자 자격소지자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는 기관장이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실질적인 방화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3.3 학력 또는 경력자 인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자격부여 폐지

소방관련학과 등과 경찰공무원 등은 경력만 있으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방화관리자수첩이 발급되고 있어 이는 시험제도 도입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강습교육을 충실히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이 교부되어야 할 것이다.

### 4.4 통합방화관리체제구축

#### 4.4.1 방화관리대상물 통합관리 법령개편

현행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와 관련된 법령체계를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체계는 1급 및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관한 방화관리 규정」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방화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법령으로 개편을 하여야 할 것이다.

#### 4.4.2 민간소방전문기관의 설립

현재 방화관리체계상의 주요 방화관리 사항을 보면 방화관리자 선·해임관리, 방화관리자 및 다중이용업종사자 안전교육, 자체점검 등으로 볼 수 있다. 관리의 주체를 보면 방화관리자 선·해임은 소방관서에서, 교육에 있어서는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지정기관에서 실시도록 되어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은 소방관서 및 관련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은 관계인, 방화관리자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관리의 주체가 다원화 되어 있어 예방소방업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지만 상호 관리업무에 대한 이해관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소방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는 예방소방업무를 통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제는 Figure 1과 같이 민간소방전문기관이 설립되어 방화관리와 방화관리자 교육 그리고 소방시설의

\*1. FSD(Fire Safety Director)의 훈련과정이 졸업시험 70점 이상, 2. 필기시험 FDNY(Fire Department of New York, 뉴욕시소방본부) 70점 이상, 3. 필기시험 통과 후 1년 이내에 FSD로서 근무하고자 하는 빌딩에서 현장시험 70점 이상이고 필수적으로 인명구조문제는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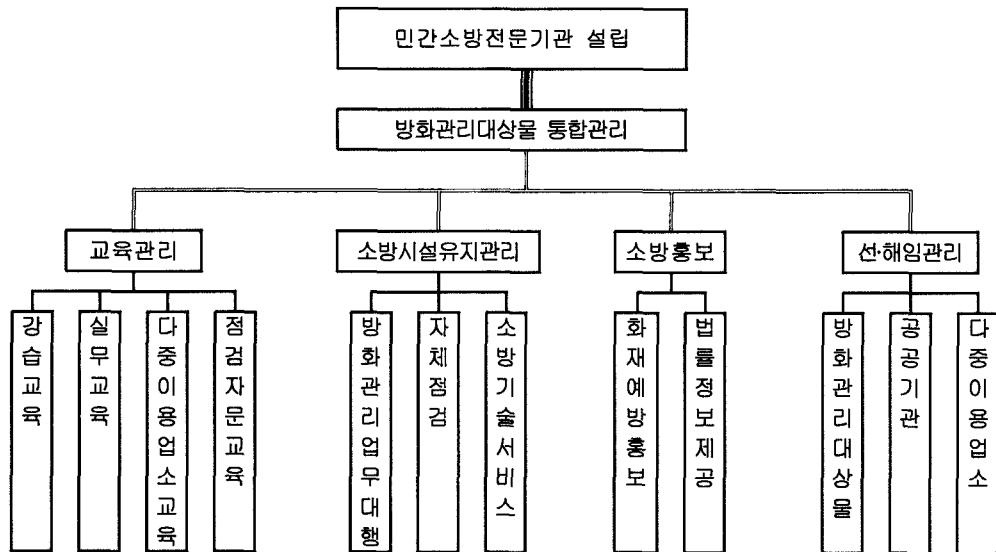


Figure 1. Model for building of unified fir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4.5 방화관리자 교육제도 개편

##### 4.5.1 교육환경개선

소방기술능력을 겸비한 방화관리자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교육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실기실습과 점검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화재시 대처할 수 있는 체험장 등을 갖춘 실기실습과 체험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교육환경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 4.5.2 다양한 소방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방화관리 업무수행에 따른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무위주의 체계적인 방화관리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소방안전교육도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전문화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① 소방시설점검실무, ② 화재조사실무, ③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④ 소방안전 사회교육, ⑤ 지진, 황사, 태풍 등 자연재해와 테러 예방교육 등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맞춤식 교육도 개설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맞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대국민을 대상으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 4.5.3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방화관리자에게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실무교육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화재 또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교육 및 훈련이 중요한다고 본다.

현행 실시되고 있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에서 매년 교육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등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법령정보를 습득하여 방화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방소방의 지름길이라 본다.

#### 4.6 자율방화관리의 체계강화

##### 4.6.1 건물주(소유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건물주(소유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실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는 운영권자이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여러 가지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 업무이다. 방화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인식제고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소방관서 등에서 각종 교육 및 시설 조사를 하기 위하여 방문할 경우 건축주(소유자)에 대한 인식전환교육이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 4.6.2 방화관리 능력평가제도 활성화

현행 실시하고 있는 방화관리 능력평가제도에서 더 나아가 능력평가결과 우수한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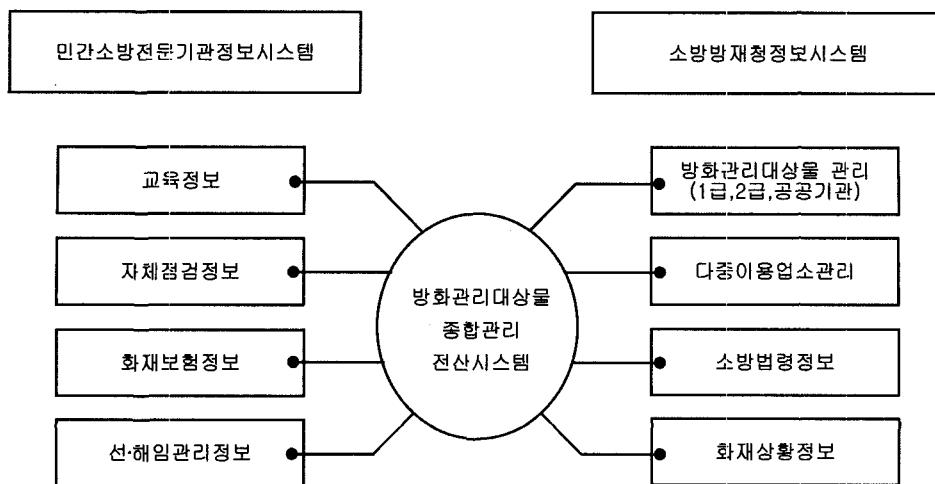


Figure 2. Model of standardized comput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the fire protection properties.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면제 또는 화재보험의 보험요율 반영 등 인센티브를 폭넓게 확대 적용하는 한편, 민간자율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수 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화관리능력평가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7 방화관리대상물의 종합관리 전산시스템화

방화관리대상을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1급·2급 방화관리대상물과 공공기관 방화관리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관할소방관서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여 교육기관 등 민간기관과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방화관리 대상물의 현황 파악을 하고 유사시에 서로 신속히 응원할 수 있도록 Figure 2와 같이 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방화관리대상물의 종합관리 전산시스템화는 예방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율방화관리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특정소방대상을 관계인의 교육수료여부까지 상호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5. 결 론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인천 라이브호프 화재 등으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치

루면서 그때마다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여 왔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통한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화관리업무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이의 엄격한 준수와 실행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국가의 실현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의 가속화속에 건축물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이 양적으로 팽창해 왔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소방업무는 국가의 행정기능으로서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소방인력과 예산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율방화관리제도이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방화관리자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을 위주로 하여 방화관리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돌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004년 6월 1일 우여곡절 끝에 소방만의 단독 관청이 아닌 기타 재난관리 부서를 통합한 청이 개청됨으로써 이제는 보다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그동안 자율방화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관주도가 아닌 민·관이 협력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자율방화관리제도가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박경원, 김희선 공저, “조직 이론강의”, 대영문화사, pp.28-31(1998).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발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발췌.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3].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
7. 제태환, “방화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2005).
8. Peter K, Schontag, “Responsibilities of the Fire Prevention and Control Manager”, Fire Protection Handbook Sixteenth Ed., pp.14-15(Boston : NFPA, 1989).
9. [http://home2.nyc.gov/html/dob/html/reference/code\\_internet.shtml](http://home2.nyc.gov/html/dob/html/reference/code_internet.shtml)
10. [http://www.ci.nyc.ny.us/html/fdny/html/c\\_of\\_f/cof\\_study\\_materials.shtml](http://www.ci.nyc.ny.us/html/fdny/html/c_of_f/cof_study_materials.shtml)

11. 이천우,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2 급 근린생활시설·공장·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연구논문집, p.18(2005).
12. “일본소방법 시행령”, 제4조
13. 한국소방안전협회, “다중이용업소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pp.35-37(2005).
14. 한국소방안전협회, “다중이용업소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p.36(2005).
15. “일본소방법 시행령”, 제3조 발췌.
16. 최종태, “한국소방행정에 관한 연구(직장 자위소방을 중심으로)”, p.57(1990).
17. 김태윤, 윤명오, “21세기 예방소방행정체제의 개선방안”, pp.158-161(1999).
18. 소방방재청, “2006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pp.192-195(2006).
19. 소방방재청, “2007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pp.203-206(2007).
20. 소방방재청, “2006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p.190 (2006).
21. 법제처, “소방관계법령 등 대한민국 현행 및 연혁법령”, 발췌, 편집(2006).
22. 한국소방안전협회, “전산데이터베이스 통계자료”, (2006).